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. 1. 30 선고 2018가합326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등]

---

### 재판경과

광주고등법원 2019. 11. 22 선고 2019나20817 판결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. 1. 30 선고 2018가합3261 판결

### 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원

담당변호사 유선영, 정요진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

담당변호사 서종표

변론 종결 2018. 12. 12.

판결 선고 2019. 1. 30.

## 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6 지분에 관하여 각 2016. 9. 18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,

나.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1/6 지분에 관하여 각 2016. 9. 18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등록명의이전절차를,각 이행하라.

2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, D, E은 각 136,541,08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. 6. 19.부터,피고 D, E은 각 2018. 6. 15.부터,

나. 피고 C은 133,346,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6. 15.부터,

다. 피고 F는 188,652,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6. 15.부터,각 2019. 1. 30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3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5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, (1) 피고 F는 188,652,485원 및 그중 7,060,870원에 대해서는 2017. 9. 21.부터, 45,050,597원에 대해서는 2017. 9. 22.부터, 127,290,816원에 대해서는 2017. 12.

14.부터, 9,250,202원에 대해서는 2018. 2. 8.부터, (2) 피고 B, D, E은 각136,541,018원 및 그중 127,290,816원에 대해서는 2017. 12. 14.부터, 9,250,202원에 대해서는 2018. 2. 8.부터, (3)

피고 C은 133,346,035원 및 그중 124,095,833원에 대해서는 2017. 11. 29.부터,

8,333,333원에 대해서는 2017. 11. 30.부터, 916,869원에 대해서는 2018. 2. 8.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들은 망 G의 형제자매들로서, 망 G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가 2017. 5.28.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.

나.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고(이하 위 각 부동산을 '이 사건 각 부동산', 위 자동차를 '이 사건 자동차'라고 한다), H조합과 I 조합에 대한 각예금채권이 있다. 그런데 망인 사망 이후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H조합과 I조합으로부터 각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망인의 예금을 지급받았다.

| 순<br>번 | 피고 | H조합           |             | I조합         |           | 합계(원)       |
|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|    | 날짜            | 금액(원)       | 날짜          | 금액(원)     |             |
| 1      | B  | 2017. 12. 14. | 127,290,816 | 2018. 2. 8. | 9,250,202 | 136,541,018 |
| 2      | C  | 2017. 11. 29. | 124,095,833 | 2018. 2. 8. | 9,250,202 | 133,346,035 |
| 3      | D  | 2017. 12. 14. | 127,290,816 | 2018. 2. 8. | 9,250,202 | 136,541,018 |
| 4      | E  | 2017. 12. 20. | 127,290,816 | 2018. 2. 8. | 9,250,202 | 136,541,018 |
| 5      | F  | 2017. 12. 20. | 127,290,816 | 2018. 2. 8. | 9,250,202 | 136,541,018 |

다. 피고 F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7. 5. 25.부터 2017. 5. 26.까지 합계6,600만 원을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 F 명의의 J조합 계좌(2017. 5. 25. 계좌개설)로 이체하였다. 피고 F는 망인 사망 이후 위 돈 중 일부로 장례식 및 묘지조성 비용 등을 지출하였고, 2017. 9. 21. 위 계좌에서 7,060,870원을 인출하였으며, 현재 45,050,597원이남아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,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2.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

#### 가. 원고

망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달라면서 2016. 9. 18. 원고와 모든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.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 재산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. 따라서 피고들은 이사건 각 부동산 및 자동차 중 각 법정상속분 1/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및 자동차등록명의이전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, 망인의 예금과 관련하여 각 취득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# 나. 피고들

원고와 망인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서(갑 제8호증)는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원고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, 설령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유언증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어서 법률에서 정한 방식을 흠결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.

### 3. 판단

가.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,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,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(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).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 야 한다(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).

나.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6. 9. 18. 작성된 증여계약서(갑 제8호증, 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서'라고 한다)에 날인된 인영이 망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으므로, 위 증여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.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부동산자로 기재되어 있고

망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, 원고가 망인 사망 후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위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진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갑 제8, 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, 증인 K의 일부 증언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작성 명의인인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1) 망인은 2016년 1월경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는 등 투병생활을 시작하였는데,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망인이 암투병 중이던 2016. 9. 18.자로 되어있다.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망인은 생전에 가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장학사업에 쓰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,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그러한 망인의 생전 의사에 부합한다.

2)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말미에는 '저의 재산관리에 대한 법률적 상담을 L 앞M 법률사무소에서 했으니 자세한 사항은 M 법률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.'라는 기재가 있는데, 실제로 망인은 생전에 M 법률사무소에서 '유언공증'에 관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다. 이는 망인이 자신의 유지를 문서화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는 정황이다. 이러한 사정은 망인 외에는 알기 어려운 내용임에도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.

3) 망인은 평소 인감도장, 신분증, 카드 등 중요 물건들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, 망인이 사망한 직후 망인의 가방은 피고 F를 거쳐 피고C에게 전달되었다. 피고들은, 피고 C이 망인의 49재 제사일에 원고의 딸 N에게 망인의 인감도장 등을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,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 없다. 원고가 망인의 사후에 망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도용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출할 만한 기회가 충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.

4)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'A오빠에게 1억 7천만 원을 차용하여 아파트 대출받지 않고 매입함', 'A오빠에게 아파트 매입 시 1억 7천만 원 무이자로 차용함'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, 망인은 실제 별지 목록(부동산) 제1항 기재 아파트 매입 시 O은행으로 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어 과연 망인이 그 기재내용처럼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한다.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(갑 제18호증)의 기재내용이 위 차용사실을 뒷받침하고 있고, 그 차용일자인 2013. 4. 15. 무렵 원고는 그 소유 토지 여러 필지를 550,000,000원에 매도하여(잔금일은 2013. 3. 29.이다)

대여할 자금이 있었으며, 평소 형제들 중 자산이 가장 많았던 점, 망인은 2013. 4. 2.경 3억원의 적금을 예치하는 등 다수의 적금을 운용하여 왔던 점(H조합에 대한 2018. 10. 2.자 금융자료제출명령 회신자료 78면 등 참조) 등에 비추어 망인이 당시 원고로부터 돈을 무이자로 차용하였을 여지는 충분하였다고 보인다.

다.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유언증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 이 사건증여계약서에 '유언'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, 위 계약서에서 망인은 '증여계약 이행 중에 망인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은 증여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원고에게 이행하게 한다.'고 정하였는바, 이러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증여계약이 유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라.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망인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와 '망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과 금융재산(J조합, P조합, 보험회사 등), 그리고 유동재산 일체를 원고에게 증여한다.'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. 그 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증여계약상의 의무를 피상속인들인 피고들이

포괄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분에 따른 이전절차를 이행하고, 망인의 금융재산에서 취득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마.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,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법정상속분 1/6 지분에 관하여 각 2016. 9. 18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, 이 사건 자동차 중각 법정상속분 1/6 지분에 관하여 각 2016. 9. 18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. 또한 원고에게, 피고 B, D, E은 각 136,541,018원 및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2018. 6. 19.부터, 피고 D, E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8. 6. 15.부터, 피고 C은 133,346,035원, 피고 F는

188,652,485원(=136,541,018원+7,060,870원+45,050,597원)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8. 6. 15.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. 1.

30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# 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종환, 판사 전진우, 판사 박형렬